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様式第34号]

氏・本貫変更届

(年 月 日)

※ 届出書は、下記の作成方法を参考に記入し、
選択項目には「○」をつけてください。

① 사건 본인 ① 事件 本人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ル	(성) / (명) (氏) / (名)			주민등록 번호 住民登録 番号	-			
		한자 漢字	(성) / (명) (氏) / (名)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소 住所									
② 성·본 ② 姓・本 本貫	변경전 성(姓) 変更前の氏	한글 ハングル		한자 漢字		변경전 본(本) 変更前 本貫	한글 ハングル		한자 漢字	
	변경한 성(姓) 変更した氏	한글 ハングル		한자 漢字		변경한 본(本) 変更した 本貫	한글 ハングル		한자 漢字	
③허가일자 ③許可年月日		년 월 일 年 月 日			법원명 裁判所の 名称					
④기타 사항 ④その他の事項										
⑤ 신고 인 ⑤ 届出 人	성명 氏名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자격 資格	(1)본인 (2)법정대리인 (3)기타(자격:) (1)届出人本人 (2)法定代理人 (3)その他 (資格:)								
	주소 住所					전화 電話 番号		이메일 電子 メール アドレス		
⑥제출인 ⑥提出者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div>작성방법</div> <div>作成方法</div>	
<p>※ 본 신고는 성·본변경허가심판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p> <p>※ この届は氏・本貫変更許可審判書謄本を受け取った日から1カ月以内に届け出なければなりません。</p> <p>②란: 사건본인의 성·본은 변경 전의 성·본과 변경한 성·본을 나누어 기재합니다.</p> <p>欄②: 事件本人の氏・本貫は変更前の氏・本貫と変更後の氏・本貫を区別して記入してください。</p> <p>③란: 성·본 변경허가일자 성·본변경허가심판서 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p> <p>欄③: 氏・本貫変更許可年月日は氏・本貫変更許可審判書謄本に記載されている年月日を記入してください。</p> <p>④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p> <p>欄④: 家族関係登録簿へ明確に記録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入してください。</p> <p>⑤란: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성·본 변경 후의 성명으로 기재합니다.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p> <p>欄⑤: 届出人本人が届け出る場合、氏・本貫の変更後の氏名を記入してください。届出人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入してください。</p> <p>⑥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p> <p>欄⑥: 提出者（届出人が記入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者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載）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受付担当公務員は身分証明書との照合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p>	
<div>첨부서류</div> <div>添付書類</div>	
<p>1. 성·본변경허가심판서 등본 1부.</p> <p>1. 氏・本貫変更許可審判書謄本1部</p> <p>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p> <p>2. 身分を確認できるもの〔家族関係登録例規第600号に基づ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 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提出者が出席した場合: 提出者の身分証明書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郵送で提出する場合: 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p>※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p> <p>※届出人が成年後見人の場合は、第2項の書類の他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添付してください。</p>	
<p>※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p> <p>※他人の署名又は印章を盗用して虚偽の届出書を提出したり、虚偽の届出を行い、家族関係登録簿に事実と異なる内容を記載させた場合は、刑法に基づき5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せられます。</p>	